

1994. 5. 10. 제정	1994. 6. 11. 개정
1994. 6. 18. 개정	1997. 3. 13. 개정
2001. 3. 24. 개정	2002. 8. 30. 개정
2002. 9. 16. 개정	2003. 12. 8. 개정
2004. 12. 16. 개정	2006. 3. 15. 개정
2006. 6. 1. 개정	2006. 9. 11. 개정
2010. 10. 21. 개정	2011. 3. 23. 개정
2012. 3. 28. 개정	2014. 3. 28. 개정
2013. 11. 15. 개정	2015. 11. 20. 개정
2016. 03. 31. 개정	2018. 03. 22 개정

**제1장 총 칙**

**제1조(상호)** 이 회사는 **제이더블유생명과학 주식회사**라 한다.

영문으로는 **JW LIFESCIENCE CORPORATION**이라 표기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의약품 제조판매업
2. 동물용의약품, 의약부외품, 화장품, 식품 및 식품첨가물, 의료용구, 위생용품 제조판매업
3. 신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성과의 대여업
4. 신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인허가의 취득 및 그의 대여업
5. 신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연구개발의 노하우의 용역사업 및 판매
6. 의약품, 공업약품의 제조연구, 각종시험의 수탁업무
7. 수출입업
8. 건설·설비·공사업 및 용역업
9.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
10. 수액관련 용기 및 소재의 연구개발, 제조 및 판매업
11. 주택건설사업
12. 음식료품의 제조, 가공, 판매, 유통업
13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

**제3조 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)**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당진시에 둔다.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 (공고방법)**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jw->

lifescience.co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## 제2장 주 식

**제5조 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**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백만주로 한다.

**제6조 (1주의 금액)**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이천오백원으로 한다.

### 제7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

-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며 종류주식은 3,750,000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
-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, 잔여재산에 관한 우선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
-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

### 제7조의 2 (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)

- ① 우선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우선배당률은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년 1% 이상 20%이하의 범위내 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
- ② 보통주식 1주당 배당금이 본조 제2항에 의한 우선주식의 1주당 우선배당금을 초과할 경우, 우선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본조 제2항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, 미지급 배당금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되어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-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, 무상증자(주식배당 포함)의 경우에는 해당 우선주식과 같은 종류 및 내용의 주식으로 한다.
- ⑤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여하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
-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된 우선주식은 발행일에 관계 없이 원래의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

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본조 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.

**제7조의 3 (전환주식)**

- ① 제7조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(이하 "전환주식").
-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원칙적으로 전환될 종류주식의 수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. 단, (i)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의 다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를 총칭하며, 이하 같다)를 발행하는 경우, (ii)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,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, (iii)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(iv)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의 이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, 그 구체적인 조정조건은 전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전환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해당금액을 전환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.

**제7조의 4 (상환주식)**

- ① 회사는 제7조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서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, 발행가액,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,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⑤ 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.

**제7조의 5 (상환전환주식)**

- ① 회사는 제7조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상환주식인 동시에 전환주식인 상환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7조의 3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조의 4 제2항 내지

제5항을 준용한다.

**제7조의 6 (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)**

- ① 이 회사는 제7조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회사의 청산시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액과 잔여재산분배시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금액이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**제8조 (신주인수권)**

-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 - 1.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2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, 기관투자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4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,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5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6.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
  - 7.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의3 규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8.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

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**제8조의2 (우리사주매수선택권)**

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.

③ 삭 제

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.

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
2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3.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8조의3 (주식매수선택권)**

① 이 회사는 임·직원(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.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·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
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

정한다.
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·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·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    -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    - 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  - 2.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
-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  -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
  -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 -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**제9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** 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**제10조 (명의개서대리인)**

-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는 결의로 정한다.
-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.
-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**제11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**

-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
-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이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**

-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0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

**제2장의2 사 채**

**제12조의2 (전환사채의 발행)**

-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백오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- 가.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  - 나.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, 기관투자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 - 다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,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 - 라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조건으로도 이를 발행 할 수 있다.
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이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익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2조의3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**

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백오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- 가.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- 나.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, 기관투자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다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,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라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
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발행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2조의4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**

제10조,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**제3장 주주총회**

**제 13조 (소집시기)**

-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**제14조 (소집권자)**

- ① 이 회사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28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

**제15조 (소집통지 및 공고)**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제4조에 정한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**제16조 (소집지)**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7조 (의장)**

- ① 이 회사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28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8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** 이 회사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 또한,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을 받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9조 (주주의 의결권)** 이 회사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**제20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** 이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**제21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**

- ① 이 회사의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2조 (주주총회 의사록)** 이 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**제4장 이사와 이사회**

**제23조 (이사의 수)** 이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.

**제24조 (이사의 선임)**

- ①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이 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24조의2 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**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-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25조 (이사의 임기)**

-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
- ② 제 26조에 의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기존의 다른 이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.

**제26조 (이사의 보선)** 이 회사의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,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27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)** 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약간명,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**제28조 (이사의 직무)**

-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,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29조 (이사의 보고의무)** 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30조 (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)**

-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회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10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31조 (이사회 의 결의방법)**

- ① 이 회사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89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

**제32조 (이사회의 의사록)** 이 회사의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에 작성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
**제32조의2 (위원회)**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 - 2. 내부거래위원회
  - 3. 감사위원회
  -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0조,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33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**

- ① 이 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②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임기(3년)당 과거 1년간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그 세부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.

**제34조 (상담역 및 고문)**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수 있다.

**제5장 감사**

**제35조 (감사의 선임)**

-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,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.
-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

**제35조1 (감사의 임기)**

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

**제35조2 (감사의 보선)**

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36조 (감사의 직무)**

-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**제36조2 (감사의 감사록)**

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**제36조3 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**

- ① 이 회사의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② 감사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임기(3년)당 과거 1년간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그 세부운영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.

**제6장 계 산**

**제37조 (사업년도)**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 38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)**

④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
⑤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
⑥ 감사는 제 1항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⑧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38조의2 (외부감사인의 선임)**

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**제39조 (이익금의 처분)**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이익준비금        | 2. 기타의 법정적립금 |
| 3. 배당금          | 4. 임의적립금     |
| 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| 6. 차기이월이익잉여금 |

**제40조 (이익배당)**

- ① 이 회사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- ③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**제41조 (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)**

- ① 이 회사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### 제7장 보 칙

**제42조 (준용규정)**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